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51032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개명 전 이름: C)

3. D (개명 전 이름: E)

4. F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05,214원과 그중 59,362,193원에 대한 2022. 3.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22. 5. 17., 피고 B, D는 2022. 4. 25.까지는 각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9.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8. 접수 제915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는 대출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6. 7.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증금액은 5,850만 원, 보증기한은 2022. 7. 22.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2021. 12.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3. 25. 주식회사 G에 대출원리금 합계 59,362,19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343,021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 회사, B,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곧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일인 2022. 3. 25.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다. 피고 D의 처분행위

피고 D는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1580호로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D, F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D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05,214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59,362,193원 +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 1,343,021원)과 그중 59,362,1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인 피고 회사는 2022. 5. 17., 피고 B, D는 2022. 4. 25.까지는 각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1개월 반 정도가 지난 2021. 12. 1.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G에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강원 횡성군 H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304,200,000원, 위 횡성군 소재 각 토지의 가액은 150,000,000원이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6,642원 상당의 채권, I조합에 대하여 2,737,001원 상당의 채권, J은행에 대하여 644원 상당의 채권, K은행에 대하여 3,800,000원 상당의 채권, G에 대하여 213,572원 상당의 채권, L단체에 대하여 62,480,67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채무는 I조합에 대한 156,688,200원 상당의 채무, 피고 F에 대한 채무 208,000,000원 상당의 채무, M에 대한 19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원고에

대한 60,705,214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I조합, IBK기업은행, J은행, G, N은행, K은행, L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F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당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D, F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F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8. 접수 제915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상은

별지

목 록

1. 안산시 단원구 O

잡종지 468㎡

2. 안산시 단원구 O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

231㎡

